

공용차량 운영·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

2025. 3.

I. 감사개요

- **(대상)** 공사 소관 공용차량 *총 15대(대형 0, 중형 7, 전기차 8)
- **(기간)** '25. 2. 24. ~ 3. 7.(소명기간 3.10.~ 14. / 중간점검 3.18.~19.)
- **(범위)** '23. 3. 1. ~ 25. 1. 31. / 공용차량 관리·운영 전반
- **(인원)** 안전감사실장(감사반장) 외 2명
- **(방법)** 서면감사 실시
- **(감사 중점사항)**
 - 차량운행관련 각종 대장 비치·기록 적정 여부
 - 임차계약 현황 및 계약방법 절차
 - 사적사용 여부(휴일 및 근무시간 외)
 - 공용차량운영관리규칙 준수 여부 전반
 - 공용차량 이용 시 여비지급 내역 확인

II. 감사결과

□ 총괄표

(단위: 천원)

총건수	합 계			재정상 조치 (회수)	주의 경고	시정	개선	징계	현지시정
	신 분 상 조치인원	재 정 상 조치금액	행정상 조 치						
3	-	280	3	280	1	1	1	-	-

- 금번 특정감사는 공용차량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적사용 및 공용차량이용 시 여비지급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상 조치 3건(시정 1, 주의 1, 개선 1), 재정상 조치 280,000원(환수 5개부서 17건) 등이 지적되었음
 -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자료 수집·분석*하여 서면조사 시행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소명자료 요청
 - * 하이패스 이용내역 + 차량등록일지 + 출장지출결의 내역을 교차점검 실시

- 또한, 공용차량운영관리규칙 제정^(2021. 11. 8. 제57호) 이후 공용차량 관리부서^(경영지원처)에서는 차량 운행일지, 주유 사용내역, 하이패스 사용내역, 차량현황 등을 반기별로 지도·점검하여 미흡사항*에 대해 주의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함
 - * 관련문서: 경영지원처-4731호(2023. 7.31./2023년 상반기 점검)
 - 경영지원처-1443호(2024. 3.12./2023년 하반기 점검)
 - 경영지원처-4556호(2024. 8. 5./2024년 상반기 점검)
 - 경영지원처- 779호(2025. 2. 5./2024년 하반기 점검)
- 이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감사실에서 찾아가는 감사 교육('25.4.2~4)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

III. 주요지적 사례

■ 사례 1 ■ 공용차량 이용 미감액에 관한 사항

- ✓ 공사 「여비규칙」 제15조에 따르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경우에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,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함
- ✓ 공사 「여비규칙」 제15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 4시간 이상 이면 3만원 지급, 4시간 미만이면 2만원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함
- ◇ 5개 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임에도 여비 감액 없이 17건 280천원을 추가 지급함(개별 환수 조치)

■ 사례 2 ■ 공용차량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

- ✓ 공사 「공용차량운영관리규칙」 제8조(차량사용자 준수사항) 2호에 따르면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
- ✓ 또한, 「취업규정」 제41조, 42조, 43조에 따르면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으며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◇ 족림사업단에서는 차량 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에 경유지에 대한 내용이 미기재 되어있으며, 당초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출장지 변경 내용(출장 결과보고서 및 지출결의서) 등을 기재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미기재됨(부서 주의)

■ 사례 3 ■ 공용차량 임차계약 업무처리 사항

✓ 차량현황(총15대 대형 0, 중형 7, 전기차 8 / 계약 만료기한 '25. 02. ~ '27. 05.)

구분		대수	계약기간	임차계약자
중형	카니발	2	3년	롯데렌터카 13대 SK렌터카 2대
	소렌토	5	3년	
전기차		8	1대 1년, 7대 3년	

✓ 공사 「공용차량운영관리규칙」 제11조(차량 임차)에 따르면 차량임차 계약 시 시중가격과 조달청 단가를 비교하여 가격 우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임차 계약 체결 함

✓ 공용차량 임차계약 업무 담당부서(경영지원처)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업체로 수의계약 체결함

▷ '지방계약법 시행령, 제30조 등에 추정가격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임차 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따라서 공사 「공용차량운영관리규칙」 제11조(차량 임차)의 규정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→ 담당부서에서 계약기간 만료(1대)에 따른 신규임차를 카탈로그 계약방식(나라장터시스템 활용)으로 추진함(2025. 3. 14./경영지원처-1669호)

VI. 향후 조치계획

○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처리결과 제출: 해당부서

- 시정조치기일: 처분지시일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하고 조치결과 보고(증빙자료 첨부)
- 기일내에 조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치 기일내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제출(감사규정 제21조)

○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찾아가는 대면교육 실시('25. 4. 2.~ 4)

○ 감사결과 공개(감사결과 보고 후 14일 이내)

- 공개범위 :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지시서 전문(개인정보 제외)
- 공개장소 : 클린아이, 홈페이지, 그룹웨어 열람게시판